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800189

신 청 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권
성택 변리사)

피신청인: 민은기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

케이만군도, 그랜드 케이만, 조지타운, 피오박스 847,

원 캐피탈 플레이스 4층

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 길11

피신청인: 민은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401호

분쟁 도메인이름은 "alicloudkorea.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닷네임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 B/D
3층 4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8. 8. 2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8. 21.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8. 8. 2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8. 8. 2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8. 9. 11.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8.9.1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8.9.12.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서정일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8.9.12.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8.9.12.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표장인 "alicloud"을 상표 및 상호의 요부로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신청인의 등록상표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데이터베이스 서버 대여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업, 전자상거래용 웹사이트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자료의 서비스업, 광대역 통신망 운영업,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송신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제공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도 진출하여 신청인의 Alicloud는 신청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 "alicloudkorea.com"의 이전을 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2016년 7월 7일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Registry Expiry Date : 2020년 7월 7일).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 "alicloudkorea.com"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일반에

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신청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표장의 명성 및 양질감에 편승하여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알리바바클라우드를 재판매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웹사이트가 금전적인 목적이나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이버스쿼팅이라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판매하기 위해 2년여 동안 각종 흥

보와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메인이름 분쟁신청 통지서를 받은 후 당사 스스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8년 9월 5일 알리클라우드코리아 사이트명을 엘엑스클라우드로 변경하였으며, 알리클라우드코리아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선점하고 있는 alicloudkorea.com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로 판단된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알리클라우드라는 명칭의 유사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미 피신청인이 조치한 사항으로 분쟁신청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기각 또는 (주)엘엑스의 메인홈페이지(www.lxn.co.kr)와 연동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요한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

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alicloudkorea.com"에서 식별력 있

는 요부는 확장자에 불과한 '.com'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

품 및 영업에 관한 출처로서 널리 알려진 'alicloud'에 'korea'가 결

합된 것이라 할 수 있고,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그 외관 및 호칭에서 신청인

의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alicloud"를 포함하는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등 아무런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alicloud"라는 상호 내지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받은 사실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표장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저명한 상표로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저명한 상표를 포함하여 구성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

진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피신청인에 의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이 사건 표장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인 < alicloudkorea.com >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서정일 (인)



결정일: 2018년 9월 27일